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747호

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31호(2023.12.27.)로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된 「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(12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1차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**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사업기간 연장) 수립 변경**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(변경없음) :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
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- 위치 :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, 진안동 일원
 - 면적 : 376,934.5㎡ [1단계 : 332,252.0㎡, 2단계 : 16,277.4㎡, 3단계 : 28,405.1㎡]
3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 :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
4.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변경없음)
 -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(변경)
 - 시행기간(변경) : 2005. 12. 15 ~ 2026. 12. 31
[당초 (1단계) 2005. 12. 15 ~ 2021. 09. 30 / (2단계) 2005. 12. 15 ~ 2024. 06. 30 / (3단계) 2005. 12. 15 ~ 2024. 12. 31]
[변경 (1단계) 2005. 12. 15 ~ 2021. 09. 30 / (2단계) 2005. 12. 15 ~ 2024. 06. 30 / (3단계) 2005. 12. 15 ~ 2026. 12. 31]
 - 시행방법(변경없음) : 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“수용 또는 사용방식”
6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7.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8.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9.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: 해당사항 없음
10.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(관계도서 게재생략)
 -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

○ 열람장소 :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(031-5189-3246)

한국토지주택공사(화성사업본부)(031-305-0555)

11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사업기간 연장) 변경 인가

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 :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

2. 사업의 목적(변경없음)

○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

3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○ 위 치 :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, 진안동 일원

○ 면 적 : 376,934.5㎡ [1단계 : 332,252.0㎡, 2단계 : 16,277.4㎡, 3단계 : 28,405.1㎡]

4. 시행자(변경없음)

○ 시 행 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5. 시행기간(변경) : 2005. 12. 15 ~ 2026. 12. 31

[당초 (1단계) 2005. 12. 15 ~ 2021. 09. 30 / (2단계) 2005. 12. 15 ~ 2024. 06. 30 /
(3단계) 2005. 12. 15 ~ 2024. 12. 31]

[변경 (1단계) 2005. 12. 15 ~ 2021. 09. 30 / (2단계) 2005. 12. 15 ~ 2024. 06. 30 /
(3단계) 2005. 12. 15 ~ 2026. 12. 31]

6. 시행방식(변경없음) : 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“수용 또는 사용방식”

7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포함)의 결정내용(변경없음)

8.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문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

○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

○ 공람장소 :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(031-5189-3246)

한국토지주택공사(화성사업본부)(031-305-0555)

9.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

○ 「농지법」 제34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